

투자설명서 등 변경 안내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일부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변경수리일:** 2014년 3월 26일

□ **대상 펀드**

- AB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AB 미국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 AB 이머징마켓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AB 월지급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AB 퀄리티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AB 유럽 증권 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AB 셀렉트 미국 증권 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 AB 위안화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투자설명서 주요 변경사항**

- **AB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종류S 신설에 따른 유의사항 문구 추가	-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신설	-	종류 A-e (AP994) 종류 C-e (AP995) 종류 S (AP996) 종류 S-P (AP997)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신설	-	종류 A-e (AP994) 종류 C-e (AP995) 종류 S (AP996) 종류 S-P (AP997)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연간 정기갱신		자료 업데이트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나. 종류형 구조	종류 신설		종류 A-e, 종류 C-e, 종류 S, 종류 S-P 신설에 따른 내용 추가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3)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신설		종류 A-e, 종류 C-e, 종류 S, 종류 S-P의 가입자격 문구 추가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나. 환매, (3)환매수수료	종류 신설		종류 A-e, 종류 C-e, 종류 S, 종류 S-P 신설에 따른 환매수수료 내용 추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신설 및 연간 정기갱신		종류 A-e, 종류 C-e, 종류 S, 종류 S-P 신설 및 연간갱신에 따른 자료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연간 정기갱신		자료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연간 정기갱신		자료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	연간 정기갱신		자료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	연간 정기갱신		자료 업데이트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가. 수탁회사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주소변경	<u>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25</u>	<u>서울시 중구 칠패로 37</u>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주소변경	<u>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u>	<u>서울시 중구 칠패로 37, HSBC빌딩 12층</u>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라. 손해배상책임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 해당투자설명서를 작성한 자 -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 해당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 AB 미국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종류S 신설에 따른 유의사항 문구 추가	-	10.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 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신설	-	종류 A-e (AP998) 종류 S (AP999) 종류 S-P (AQ000)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신설	-	종류 A-e (AP998) 종류 S (AP999) 종류 S-P (AQ000)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연간 정기갱신		자료 업데이트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나. 종류형 구조	종류 신설		종류 A-e, 종류 S, 종류S-P 신설에 따른 내용 추가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3)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신설		종류 A-e, 종류 S, 종류S-P의 가입 자격 문구 추가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나. 환매, (3)환매수수료	종류 신설		종류 A-e, 종류 S, 종류S-P 신설에 따른 환매수수료 내용 추가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신설 및 연간 정기갱신		종류 A-e, 종류 S, 종류S-P 신설 및 연간갱신에 따른 자료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연간 정기갱신		자료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연간 정기갱신		자료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	연간 정기갱신		자료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	연간 정기갱신		자료 업데이트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가. 수탁회사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주소변경	<u>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25</u>	<u>서울시 중구 칠패로 37</u>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주소변경	<u>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u>	<u>서울시 중구 칠패로 37, HSBC빌딩 12층</u>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라. 손해배상책임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 <u>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u> - <u>해당투자설명서를 작성한 자</u> - <u>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u>	- <u>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u> - <u>해당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u> - <u>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u>

- AB 이머징마켓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종류S 신설에 따른 유의사항 문	-	10.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구 추가		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 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신설	-	종류 A-e (AQ001) 종류 C-e (AQ002) 종류 S (AQ003)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신설	-	종류 A-e (AQ001) 종류 C-e (AQ002) 종류 S (AQ003)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자료 갱신		자료 업데이트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나. 종류형 구조	종류 신설		종류 A-e, 종류 C-e, 종류 S 신설에 따른 내용 추가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3)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신설		종류 A-e, 종류 C-e, 종류 S의 가입자격 문구 추가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나. 환매, (3)환매수수료	종류 신설		종류 A-e, 종류 C-e, 종류 S 신설에 따른 환매수수료 내용 추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신설		종류 A-e, 종류 C-e, 종류 S 신설에 따른 자료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	자료 갱신		자료 업데이트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가. 수탁회사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주소변경	<u>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25</u>	<u>서울시 중구 칠패로 37</u>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주소변경	<u>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u>	<u>서울시 중구 칠패로 37, HSBC빌딩 12층</u>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라. 손해배상책임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 <u>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u> - <u>해당투자설명서를 작성한 자</u> - <u>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u>	- <u>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u> - <u>해당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u> - <u>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u>

- AB 월지급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종류S 신설에 따른 유의사항 문구 추가	-	<u>12.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 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u>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신설	-	종류 A-e (AQ004) 종류 S (AP103)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신설	-	종류 A-e (AQ004) 종류 S (AP103)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자료 갱신		자료 업데이트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나. 종류형 구조	종류 신설		종류 A-e 및 종류 S 신설에 따른 내용 추가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3)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신설		종류 A-e 및 종류 S의 가입자격 문구 추가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나. 환매, (3)환매수수료	종류 신설		종류 A-e 및 종류 S 신설에 따른 환매수수료 내용 추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신설		종류 A-e 및 종류 S 신설에 따른 자료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	자료 갱신		자료 업데이트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가. 수탁회사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주소변경	<u>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25</u>	<u>서울시 중구 칠패로 37</u>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주소변경	<u>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u>	<u>서울시 중구 칠패로 37, HSBC빌딩 12층</u>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라. 손해배상책임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 <u>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u> - <u>해당투자설명서를 작성한 자</u> - <u>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u>	- <u>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u> - <u>해당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u> - <u>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u>

- AB 퀄리티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u>투자설명서</u> 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u>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u> 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종류S 신설에 따른 유의사항 문구 추가	-	<u>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u>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신설	-	종류 A-e (AP104) 종류 C-e (AQ005) 종류 S (AQ006)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신설	-	종류 A-e (AP104) 종류 C-e (AQ005) 종류 S (AQ006)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연혁내용 추가		집합투자기구의 연혁내용 업데이트
4. 집합투자업자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회사주소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84 서울파이낸스센터 14층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14층 (태평로1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연간 정기갱신		자료 업데이트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나. 종류형 구조	종류 신설		종류 A-e, 종류 C-e, 종류 S 신설에 따른 내용 추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10)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법시행령 제26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③ (생략) 1. (이하생략)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9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③ (생략) 1. (이하생략)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3)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신설		종류 A-e, 종류 C-e, 종류 S의 가입자격 문구 추가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나. 환매, (3)환매수수료	종류 신설		종류 A-e, 종류 C-e, 종류 S 신설에 따른 환매수수료 내용 추가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신설 및 연간 정기갱신		종류 A-e, 종류 C-e, 종류 S 신설 및 연간갱신에 따른 자료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연간 정기갱신		자료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연간 정기갱신		자료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	연간 정기갱신		자료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회사주소 변경	<u>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84 서울파이낸스센터 14층</u>	<u>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14층 (태평로1가)</u>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	연간 정기갱신		자료 업데이트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가. 수탁회사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주소변경	<u>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25</u>	<u>서울시 중구 칠패로 37</u>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주소변경	<u>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u>	<u>서울시 중구 칠패로 37, HSBC빌딩 12층</u>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채권평가회사 사명 변경 반영	<u>한국채권평가 서울 종로구 세종로211</u>	<u>한국자산평가 서울 종로구 율곡로 88</u>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2)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 수익자총회는 <u>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2이상과 발행된 수익</u>	- 수익자총회는 <u>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4분의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u>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p><u>증권의 총좌수의3분의1 이상 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 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 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 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 증권의 총좌수의4분의1 이상 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u></p>	<p><u>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 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의 총좌수의 5분의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u></p>
<p>1. 투자자의 권리에 관 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2)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p>	<p>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p>	<p>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 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 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 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 려는 수익자는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수익자 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p>	<p>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 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수익자는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한 서 면을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 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법 제190조 제6항 단서 및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 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 도록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 입니다.</p>
<p>1. 투자자의 권리에 관 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2)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p>	<p>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p>	<p>- 집합투자업자는 <u>수익자총회 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 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 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 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 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 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 다.</u>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 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 까지 연기투자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p> <p>-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p>	<p>-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0조 제5 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 터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 (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 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 기투자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 야 합니다.</p> <p>-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p>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p><u>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u></p>	<p><u>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u></p>
<p>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4) 반대매수청구권</p>	<p>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p>	<p><u>법 제188조제2항각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u></p>	<p><u>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u></p> <p><u>1. 법 제18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u></p> <p><u>2.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u></p>
<p>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라. 손해배상책임</p>	<p>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p>	<p><u>-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u> <u>- 해당투자설명서를 작성한 자</u></p>	<p><u>-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u> <u>- 해당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u></p>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 <u>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u>	- <u>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u>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영업보고서] 3) <u>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u>	[영업보고서] 3) <u>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u>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2)자산운용보고서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으로</u> 표시한 경우	(2)자산운용보고서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u> 표시한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3)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u>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u>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u>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u>	(3)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u>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u>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u>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u>

- AB 유럽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문서 전반	펀드명칭 변경	<u>AB 유럽 인컴 증권 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u>	<u>AB 유럽 증권 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u>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종류S 신설에 따른 유의사항 문구 추가	-	<u>10.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 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u>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신설	-	종류 A-e (AQ007) 종류 C-e (AQ008) 종류 S (AQ009)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신설	-	종류 A-e (AQ007) 종류 C-e (AQ008) 종류 S (AQ009)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연혁내용 추가		집합투자기구의 연혁내용 업데이트
4. 집합투자업자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회사주소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84 서울파이낸스센터 14층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14층 (태평로1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자료 갱신		자료 업데이트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나. 종류형 구조	종류 신설		종류 A-e, 종류 C-e, 종류 S 신설에 따른 내용 추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가. 투자대상, 10)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법시행령 제26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3)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신설		종류 A-e, 종류 C-e, 종류 S의 가입자격 문구 추가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나. 환매, (3)환매수수료	종류 신설		종류 A-e, 종류 C-e, 종류 S 신설에 따른 환매수수료 내용 추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신설		종류 A-e, 종류 C-e, 종류 S 신설에 따른 자료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회사주소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84 서울파이낸스센터 14층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14층 (태평로1가)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	자료 갱신		자료 업데이트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가. 수탁회사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주소변경	<u>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25</u>	<u>서울시 중구 칠패로 37</u>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주소변경	<u>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u>	<u>서울시 중구 칠패로 37, HSBC빌딩 12층</u>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라. 손해배상책임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 <u>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u> - <u>해당투자설명서를 작성한 자</u> - <u>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u>	- <u>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u> - <u>해당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u> - <u>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u>

- AB 셀렉트 미국 증권 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종류S 신설에 따른 유의사항 문구 추가	-	<u>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u>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신설	-	종류 S (AQ010)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신설	-	종류 S (AQ010)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연혁내용 추가		집합투자기구의 연혁내용 업데이트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연간 정기갱신		자료 업데이트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나. 종류형 구조	종류 신설		종류 S 신설에 따른 내용 추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나. 투자제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③ (생략) 1. (이하생략)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9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③ (생략) 1. (이하생략)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3)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신설		종류 S의 가입자격 문구 추가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나. 환매, (3)환매수수료	종류 신설		종류 S 신설에 따른 환매수수료 내용 추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신설 및 연간 정기갱신		종류 S 신설 및 연간갱신에 따른 자료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연간 정기갱신		자료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연간 정기갱신		자료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	연간 정기갱신		자료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	연간 정기갱신		자료 업데이트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가. 수탁회사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주소변경	<u>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25</u>	<u>서울시 중구 칠패로 37</u>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주소변경	<u>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u>	<u>서울시 중구 칠패로 37, HSBC빌딩 12층</u>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채권평가회사 사명 변경 반영	<u>한국채권평가 서울 종로구 세종로211</u>	<u>한국자산평가 서울 종로구 율곡로 88</u>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2)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 수익자총회는 <u>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2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1 이상</u> 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u>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1 이상</u> 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는 <u>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1 이상</u> 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2)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수익자는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수익자는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 제190조 제6항 단서 및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p>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2)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p>	<p>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p>	<p>- <u>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u></p> <p>- <u>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투자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u></p> <p>- <u>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u></p>	<p>- <u>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투자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u></p> <p>- <u>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u></p>
<p>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4) 반대매수청구권</p>	<p>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p>	<p><u>법 제188조제2항각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u></p>	<p><u>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u></p> <p>1. <u>법 제188조 제2항 각 호 외의</u></p>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p><u>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u></p>	<p><u>부부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u></p> <p><u>2.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u></p>
<p>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나. 손해배상책임</p>	<p>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p>	<p><u>-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u> <u>- 해당투자설명서를 작성한 자</u> <u>-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u></p>	<p><u>-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u> <u>- 해당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u> <u>-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u></p>
<p>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p>	<p>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p>	<p>[영업보고서] 3)<u>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u></p>	<p>[영업보고서] 3) <u>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u></p>
<p>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p>	<p>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p>	<p>(2)자산운용보고서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으로</u> 표시한 경우</p>	<p>(2)자산운용보고서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u> 표시한 경우</p>
<p>제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p>	<p>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p>	<p>(2) 수시공시 1~7. (생략) <u>8.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u></p>	<p>(2) 수시공시 1~7. (생략) <u>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9호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u></p>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p><u>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 제1항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u></p> <p><u>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9호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u></p> <p><u>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u></p>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3)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u>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u>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u>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u>	(3)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u>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u>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u>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u>

- AB 위안화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종류S 신설에 따른 유의사항 문구 추가	-	<u>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u>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신설	-	종류 A-e (AQ011) 종류 C-e (AQ012) 종류 S (AQ013)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신설	-	종류 A-e (AQ011) 종류 C-e (AQ012) 종류 S (AQ013)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연혁내용 추가		집합투자기구의 연혁내용 업데이트
4. 집합투자업자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회사주소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84 서울파이낸스센터 14층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14층 (태평로1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자료 갱신		자료 업데이트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나. 종류형 구조	종류 신설		종류 A-e, 종류 C-e, 종류 S 신설에 따른 내용 추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가. 투자대상, 10)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법시행령 제26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3)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신설		종류 A-e, 종류 C-e, 종류 S의 가입자격 문구 추가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나. 환매, (3)환매수수료	종류 신설		종류 A-e, 종류 C-e, 종류 S 신설에 따른 환매수수료 내용 추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신설		종류 A-e, 종류 C-e, 종류 S 신설에 따른 자료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회사주소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84 서울파이낸스센터 14층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14층 (태평로1가)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	자료 갱신		자료 업데이트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가. 수탁회사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주소변경	<u>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25</u>	<u>서울시 중구 칠패로 37</u>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주소변경	<u>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u>	<u>서울시 중구 칠패로 37, HSBC빌딩 12층</u>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라. 손해배상책임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u>-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u> <u>- 해당투자설명서를 작성한 자</u> <u>-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u>	<u>-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u> <u>- 해당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u> <u>-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u>

기 타: 기타 자세한 변경내용은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규약 변경 안내

집합투자규약 일부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변경수리일:** 2014년 3월 26일

□ **대상 펀드**

- AB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AB 미국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 AB 이머징마켓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AB 월지급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AB 퀄리티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AB 유럽 증권 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AB 셀렉트 미국 증권 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 AB 위안화 플러스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AB 위안화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집합투자규약 주요 변경사항**

- **AB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제3항	종류 A-e, C-e, S, S-P 추가	(추가)	2. 종류 A-e 수익증권 4. 종류 C-e 수익증권 6. 종류 S 수익증권 8. 종류 S-P 수익증권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제1항	종류 A-e, C-e, S, S-P 추가	(추가)	2. 종류 A-e 수익증권 4. 종류 C-e 수익증권 6. 종류 S 수익증권 8. 종류 S-P 수익증권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제1항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11. 법 시행령 제26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1.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25조(판매가격) 제1항	종류 A-e, C-e, S, S-P 추가	(추가)	2. 종류 A-e 수익증권 :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투자자 4. 종류 C-e 수익증권: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투자자 6. 종류 S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검정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p>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p> <p>8. 종류 S-P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p>
제39조(보수) 제3항	종류 A-e, C-e, S, S-P 추가	(추가)	<p>(종류 A-e)</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10% 2. 판매회사보수율: 연 0.25% 3. 신탁업자보수율: 연 0.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5% <p>(종류 C-e)</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10% 2. 판매회사보수율: 연 0.50% 3. 신탁업자보수율: 연 0.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5% <p>(종류 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10% 2. 판매회사보수율: 연 0.25% 3. 신탁업자보수율: 연 0.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5% <p>(종류 S-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10% 2. 판매회사보수율: 연 0.18% 3. 신탁업자보수율: 연 0.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5%
제40조(판매수수료)	종류 A-e, C-e, S, S-P 추가	<p>①판매회사는 종류A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이하생략)</p> <p>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당해 종류 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p>	<p>①판매회사는 종류A 수익증권 및 종류 A-e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이하생략)</p> <p>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당해 종류 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p>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p>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의 <u>100분의 0.75 범위 이내에서 부과한다.</u></p> <p>(추가)</p> <p>③ <u>제2항의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제2항에서</u> 정한 범위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다. 판매회사는 <u>제2항의 범위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율을</u> 달리 정하거나...(이하생략)</p>	<p>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u>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u></p> <p><u>1. 종류 A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75% 이내</u></p> <p><u>2. 종류 A-e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375% 이내</u></p> <p>③ 판매회사는 종류 S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수익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을 100분의 0.15 범위 내에서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다음 각호의 수익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 종류 S수익증권 후취판매수수료: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p> <p>⑤ <u>제2항 및 제4항의 판매수수료율은 제2항 및 제4항에서</u> 정한 범위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다. 판매회사는 <u>제2항 및 제4항의 범위내에서 판매수수료율을</u> 달리 정하거나...(이하생략)</p>
제41조(환매수수료) 제2항	종류 A-e, C-e, S, S-P 추가	(추가)	2. 종류 A-e 수익증권: 30일미만: 이익금의 10%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4. 종류 C-e 수익증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6. 종류 S 수익증권: 30일미만: 이익금의 10% 8. 종류 S-P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없음
제41조(환매수수료) 제3항	종류 S-P 추가에 따른 문구 추가	③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종류 C-P 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이하생략)	③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종류 C-P 및 종류 S-P 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이하생략)
제52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종류 S-P 추가에 따른 문구 추가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종류 C-P 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종류 C-P 및 종류 S-P 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 AB 미국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제3항	종류 A-e, S, S-P 추가	(추가)	2. 종류 A-e 수익증권 9. 종류 S 수익증권 11. 종류 S-P 수익증권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제1항	종류 A-e, C-e, S, S-P 추가	(추가)	2. 종류 A-e 수익증권 9. 종류 S 수익증권 11. 종류 S-P 수익증권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제1항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12. 법 시행령 제26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2.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25조(판매가격) 제1항	종류 A-e, S, S-P 추가	(추가)	2. 종류 A-e 수익증권 :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투자자 9. 종류 S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11. 종류 S-P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받은 회사(검정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제39조(보수) 제3항	종류 A-e, S, S-P 추가	(추가)	<p>(종류 A-e)</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10% 2. 판매회사보수율: 연 0.40% 3. 신탁업자보수율: 연 0.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5% <p>(종류 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10% 2. 판매회사보수율: 연 0.25% 3. 신탁업자보수율: 연 0.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5% <p>(종류 S-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10% 2. 판매회사보수율: 연 0.20% 3. 신탁업자보수율: 연 0.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5%
제40조(판매수수료)	종류 A-e, S, S-P 추가	<p>①판매회사는 종류A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이하생략)</p> <p>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당해 종류 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 1 범위 이내에서 부과한다.</p> <p>(추가)</p>	<p>①판매회사는 종류A 수익증권 및 종류 A-e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이하생략)</p> <p>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당해 종류 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류 A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1.0% 이내 2. 종류 A-e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50% 이내 <p>③판매회사는 종류 S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p>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p>③제2항의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제2항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다. 판매회사는 제2항의 범위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이하생략)</p>	<p>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수익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을 100분의 0.15 범위 내에서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다음 각호의 수익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금액으로 한다.</p> <p>1. 종류 S수익증권 후취판매수수료: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p> <p>⑤제2항 및 제4항의 판매수수료율은 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다. 판매회사는 제2항 및 제4항의 범위내에서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이하생략)</p>
제41조(환매수수료) 제2항	종류 A-e, S, S-P 추가	(추가)	<p>2. 종류 A-e 수익증권: 30일미만: 이익금의 10%</p> <p>9. 종류 S 수익증권: 30일미만: 이익금의10%</p> <p>11. 종류 S-P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없음</p>
제41조(환매수수료) 제3항	종류 S-P 추가에 따른 문구 추가	③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종류 C-P 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③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종류 C-P 및 종류 S-P 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이하생략)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라...(이하생략)	
제52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종류 S-P 추가에 따른 문구 추가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종류 C-P 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종류 C-P 및 종류 S-P 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 AB 이머징마켓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제3항	종류 A-e, C-e, S, 추가	(추가)	2. 종류 A-e 수익증권 4. 종류 C-e 수익증권 6. 종류 S 수익증권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제1항	종류 A-e, C-e, S, 추가	(추가)	2. 종류 A-e 수익증권 4. 종류 C-e 수익증권 6. 종류 S 수익증권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제1항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11. 법 시행령 제26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1.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25조(판매가격) 제1항	종류 A-e, C-e, S, 추가	(추가)	2. 종류 A-e 수익증권 :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투자자 4. 종류 C-e 수익증권: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투자자 6. 종류 S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제39조(보수) 제3항	종류 A-e, C-e, S, 추가	(추가)	(종류 A-e)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10% 2. 판매회사보수율: 연 0.25% 3. 신탁업자보수율: 연 0.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5% (종류 C-e)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10% 2. 판매회사보수율: 연 0.50% 3. 신탁업자보수율: 연 0.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5%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종류 S)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10% 2. 판매회사보수율: 연 0.25% 3. 신탁업자보수율: 연 0.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5%
제40조(판매수수료)	종류 A-e, C-e, S, 추가	① 판매회사는 종류A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이하생략) 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당해 종류 수익증권 매수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 0.75 범위 이내에서 부과한다. (추가)	① 판매회사는 종류A 수익증권 및 종류 A-e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이하생략) 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당해 종류 수익증권 매수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종류 A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75% 이내 2. 종류 A-e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375% 이내 ③ 판매회사는 종류 S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수익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을 100분의 0.15 범위 내에서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다음 각호의 수익증권별 후취판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p>③제2항의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제2항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다. 판매회사는 제2항의 범위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이하생략)</p>	<p>매수수료율을 곱한금액으로 한다.</p> <p>1. 종류 S 수익증권 후취판매수수료: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p> <p>⑤제2항 및 제4항의 판매수수료율은 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다. 판매회사는 제2항 및 제4항의 범위내에서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이하생략)</p>
제41조(환매수수료) 제2항	종류 A-e, C-e, S, 추가	(추가)	<p>2. 종류 A-e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없음</p> <p>4. 종류 C-e 수익증권: 90일미만: 이익금의 70%</p> <p>6. 종류 S 수익증권: 90일미만: 이익금의 70%</p>

- AB 월지급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제3항	종류 A-e 및 종류 S 추가	(추가)	<p>2. 종류 A-e 수익증권</p> <p>4. 종류 S 수익증권</p>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제1항	종류 A-e 및 종류 S 추가	(추가)	<p>2. 종류 A-e 수익증권</p> <p>4. 종류 S 수익증권</p>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제1항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11. 법 시행령 제2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1.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25조(판매가격) 제1항	종류 A-e 및 종류 S 추가	(추가)	<p>2. 종류 A-e 수익증권 :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투자자</p> <p>4. 종류 S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검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p>
제39조(보수) 제3항	종류 A-e 및 종류 S 추가	(추가)	<p>(종류 A-e)</p> <p>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10%</p> <p>2. 판매회사보수율: 연 0.275%</p> <p>3. 신탁업자보수율: 연 0.04%</p> <p>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p>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0.025% (종류 S)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10% 2. 판매회사보수율: 연 0.25% 3. 신탁업자보수율: 연 0.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5%
제40조(판매수수료)	종류 A-e 및 종류 S 추가	<p>① 판매회사는 종류A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이하생략)</p> <p>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당해 종류 수익증권 매수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 1 범위 이내에서 부과한다.</p> <p>(추가)</p>	<p>① 판매회사는 종류A 수익증권 및 종류 A-e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이하생략)</p> <p>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당해 종류 수익증권 매수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 종류 A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1.0% 이내</p> <p>2. 종류 A-e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50% 이내</p> <p>③ 판매회사는 종류 S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수익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을 100분의 0.15 범위 내에서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p>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p>③ 제2항의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제2항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다. 판매회사는 제2항의 범위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이하생략)</p>	<p>로 다음 각호의 수익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금액으로 한다.</p> <p>1. 종류 S수익증권 후취판매수수료: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p> <p>⑤ 제2항 및 제4항의 판매수수료율은 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다. 판매회사는 제2항 및 제4항의 범위내에서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이하생략)</p>
제41조(환매수수료) 제2항	종류 A-e 및 종류 S 추가	(추가)	<p>2. 종류 A-e 수익증권: 30일미만: 이익금의 10%</p> <p>4. 종류 S 수익증권: 30일미만: 이익금의 10%</p>

- AB 퀄리티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제3항	종류 A-e, C-e, S, 추가	(추가)	<p>2. 종류 A-e 수익증권</p> <p>4. 종류 C-e 수익증권</p> <p>7. 종류 S 수익증권</p>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제1항	종류 A-e, C-e, S, 추가	(추가)	<p>2. 종류 A-e 수익증권</p> <p>4. 종류 C-e 수익증권</p> <p>7. 종류 S 수익증권</p>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제1항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11. 법 시행령 제26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1.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제4항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1. (이하생략)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9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1. (이하생략)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제25조(판매가격) 제1항	종류 A-e, C-e, S, 추가	(추가)	<p>2. 종류 A-e 수익증권 :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투자자</p> <p>4. 종류 C-e 수익증권: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투자자</p> <p>7. 종류 S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p>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37조(수익자총회)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p>⑥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3분의2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4분의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p>	<p>스팀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p> <p>⑥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4분의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p>
		<p>⑦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추가)</p>	<p>⑦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법제190조 제6항 단서 및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p>
		<p>⑧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 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p>	<p>⑧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6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p>
		<p>⑨ 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p>	<p>⑨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p>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p><u>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u></p>	<p><u>하여는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본다.</u></p>
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p><u>① 법 제18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u></p>	<p><u>①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u></p> <p><u>1. 법 제18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u></p> <p><u>2.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u></p>
제39조(보수) 제3항	종류 A-e, C-e, S,	(추가)	(종류 A-e)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추가		<p>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15%</p> <p>2. 판매회사보수율: 연 0.30%</p> <p>3. 신탁업자보수율: 연 0.04%</p> <p>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5%</p> <p>(종류 C-e)</p> <p>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15%</p> <p>2. 판매회사보수율: 연 0.50%</p> <p>3. 신탁업자보수율: 연 0.04%</p> <p>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5%</p> <p>(종류 S)</p> <p>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15%</p> <p>2. 판매회사보수율: 연 0.25%</p> <p>3. 신탁업자보수율: 연 0.04%</p> <p>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5%</p>
제40조(판매수수료)	종류 A-e, C-e, S, 추가	<p>①판매회사는 종류A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이하생략)</p> <p>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 (당해 종류 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 0.75 범위이내에서 부과한다.</p> <p>(추가)</p>	<p>①판매회사는 종류A 수익증권 및 종류 A-e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이하생략)</p> <p>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 (당해 종류 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 종류 A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75% 이내</p> <p>2. 종류 A-e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375% 이내</p> <p>③판매회사는 종류 S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p>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p>③제2항의 <u>선취판매수수료율은 제2항에서</u> 정한 범위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다. 판매회사는 <u>제2항의 범위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율을</u> 달리 정하거나...(이하생략)</p>	<p>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수익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을 100분의 0.15 범위 내에서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다음 각호의 수익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금액으로 한다.</p> <p>1. 종류 S수익증권 후취판매수수료: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0.15%이내</p> <p>⑤제2항 및 제4항의 판매수수료율은 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범위내에서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다. 판매회사는 <u>제2항 및 제4항의 범위내에서 판매수수료율을</u> 달리 정하거나...(이하생략)</p>
제41조(환매수수료) 제2항	종류 A-e, C-e, S, 추가	(추가)	<p>2. 종류 A-e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없음</p> <p>4. 종류 C-e 수익증권: 90일미만: 이익금의 70%</p> <p>6. 종류 S 수익증권: 90일미만: 이익금의 70%</p>
제44조(집합투자업자 및신탁업자의변경) 제3항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추가)	6. 법 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47조(투자신탁의합병) 제2항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중도 생략)...각 투자신탁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중도 생략)...각 투자신탁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반영	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추가)	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 2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0조(공시및보고서 등)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p>⑤ (생략)</p> <p>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p> <p>⑥신탁업자는...(중도 생략).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5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항 단서 각 호를 적용함에 있어 자산운용보고서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로 본다.</p>	<p>⑤ (생략)</p> <p>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p> <p>⑥신탁업자는...(중도 생략).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7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 AB 유럽 증권 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문서 전반	펀드명칭 변경	AB 유럽 인컴 증권 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AB 유럽 증권 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제3항	종류 A-e, C-e, S, 추가	(추가)	2. 종류 A-e 수익증권 4. 종류 C-e 수익증권 7. 종류 S 수익증권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제1항	종류 A-e, C-e, S, 추가	(추가)	2. 종류 A-e 수익증권 4. 종류 C-e 수익증권 7. 종류 S 수익증권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제1항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11. 법 시행령 제26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1.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25조(판매가격) 제1항	종류 A-e, C-e, S, 추가	(추가)	2. 종류 A-e 수익증권 :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투자자 4. 종류C-e 수익증권: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투자자 7. 종류 S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제39조(보수) 제3항	종류 A-e, C-e, S, 추가	(추가)	<p>(종류 A-e)</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15% 2. 판매회사보수율: 연 0.30% 3. 신탁업자보수율: 연 0.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5% <p>(종류 C-e)</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15% 2. 판매회사보수율: 연 0.50% 3. 신탁업자보수율: 연 0.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5% <p>(종류 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15% 2. 판매회사보수율: 연 0.25% 3. 신탁업자보수율: 연 0.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5%
제40조(판매수수료)	종류 A-e, C-e, S, 추가	<p>①판매회사는 종류A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이하생략)</p> <p>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당해 종류 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 0.75 범위이내에서 부과한다.</p> <p>(추가)</p>	<p>①판매회사는 종류A 수익증권 및 종류 A-e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이하생략)</p> <p>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당해 종류 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 종류 A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75% 이내</p> <p>2. 종류 A-e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375% 이내</p> <p>③판매회사는 종류 S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p>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p>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수익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을 100분의 0.15 범위 내에서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다음 각호의 수익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금액으로 한다.</p> <p>1. 종류 S수익증권 후취판매수수료: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p>
		<p>③제2항의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제2항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다. 판매회사는 제2항의 범위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이하생략)</p>	<p>⑤제2항 및 제4항의 판매수수료율은 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다. 판매회사는 제2항 및 제4항의 범위내에서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이하생략)</p>
제41조(환매수수료) 제2항	종류 A-e, C-e, S, 추가	(추가)	<p>2. 종류 A-e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없음</p> <p>4. 종류 C-e 수익증권: 90일미만: 이익금의 70%</p> <p>6. 종류 S 수익증권: 90일미만: 이익금의 70%</p>

- AB 셀렉트 미국 증권 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제3항	종류 S 추가	(추가)	10. 종류 S 수익증권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제1항	종류 S 추가	(추가)	10. 종류 S 수익증권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제1항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12. 법 시행령 제26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2.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제4항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1. (이하생략)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9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1. (이하생략)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제25조(판매가격) 제1항	종류 S 추가	(추가)	10. 종류 S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검정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제37조(수익자총회)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p>⑥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p> <p>⑦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추가)</p> <p>⑧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p>	<p>⑥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p> <p>⑦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90조 제6항 단서 및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p> <p>⑧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p>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p>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u>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 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u>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p> <p>⑨ <u>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서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u></p>	<p>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u>제6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u></p> <p>⑨ <u>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본다.</u></p>
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① <u>법 제18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u>	① <u>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u> 1. <u>법 제18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u>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p><u>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u></p>	<p><u>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u></p> <p><u>2.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u></p>
제39조(보수) 제3항	종류 S 추가	(추가)	<p>(종류 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20% 2. 판매회사보수율: 연 0.25% 3. 신탁업자보수율: 연 0.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5%
제40조(판매수수료)	종류 S 추가	(추가)	<p>③판매회사는 종류 S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수익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을 100분의 0.15 범위 내에서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p>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p>③ 제2항의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제2항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다. 판매회사는 제2항의 범위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이하생략)</p>	<p>다음 각호의 수익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급한금액으로 한다.</p> <p>1. 종류 S수익증권 후취판매수수료: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0.15%이내</p> <p>⑤ 제2항 및 제4항의 판매수수료율은 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범위내에서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다. 판매회사는 제2항 및 제4항의 범위내에서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이하생략)</p>
제41조(환매수수료) 제2항	종류 S 추가	(추가)	10. 종류 S 수익증권: 30일미만: 이익금의 10%
제44조(집합투자업자 및신탁업자의변경) 제3항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추가)	6. 법 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47조(투자신탁의합병) 제2항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중도 생략)...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추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중도 생략)...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 2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0조(공시및보고서 등)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p>⑤ (생략)</p> <p>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p> <p>⑥ 신탁업자는...(중도 생략).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5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항 단서 각 호를 적용함에</p>	<p>⑤ (생략)</p> <p>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p> <p>⑥ 신탁업자는...(중도 생략).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7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있어 자산운용보고서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로 본다.	

- AB 위안화 플러스 증권 모두자신탁(채권-재간접형)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제1항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11. 법 시행령 제26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1.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AB 위안화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제3항	종류 A-e, C-e, S, 추가	(추가)	2. 종류 A-e 수익증권 4. 종류 C-e 수익증권 7. 종류 S 수익증권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제1항	종류 A-e, C-e, S, 추가	(추가)	2. 종류 A-e 수익증권 4. 종류 C-e 수익증권 7. 종류 S 수익증권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제1항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5. 법 시행령 제26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5.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25조(판매가격) 제1항	종류 A-e, C-e, S, 추가	(추가)	2. 종류 A-e 수익증권 :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투자자 4. 종류 C-e 수익증권: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투자자 7. 종류 S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검정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제39조(보수) 제3항	종류 A-e, C-e, S, 추가	(추가)	(종류 A-e)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10% 2. 판매회사보수율: 연 0.30% 3. 신탁업자보수율: 연 0.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5% (종류 C-e)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10% 2. 판매회사보수율: 연 0.50% 3. 신탁업자보수율: 연 0.04%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p>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5% (종류 S)</p> <p>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10%</p> <p>2. 판매회사보수율: 연 0.25%</p> <p>3. 신탁업자보수율: 연 0.04%</p> <p>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5%</p>
제40조(판매수수료)	종류 A-e, C-e, S, 추가	<p>①판매회사는 종류A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이하생략)</p> <p>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당해 종류 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 0.75 범위이내에서 초과한다.</p> <p>(추가)</p>	<p>①판매회사는 종류A 수익증권 및 종류 A-e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이하생략)</p> <p>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당해 종류 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 종류 A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75% 이내</p> <p>2. 종류 A-e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375% 이내</p> <p>③판매회사는 종류 S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수익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을 100분의 0.15 범위 내에서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p>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p>③제2항의 <u>선취판매수수료율</u>은 제2항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다. 판매회사는 <u>제2항의 범위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율을</u> 달리 정하거나...(이하생략)</p>	<p>기산일로 하여 환매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 까지를 말한다.)별로 다음 각호의 수익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금액으로 한다.</p> <p>1. 종류 S수익증권 후취판매수수료: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p> <p>⑤제2항 및 제4항의 <u>판매수수료율</u>은 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다. 판매회사는 <u>제2항 및 제4항의 범위내에서 판매수수료율을</u> 달리 정하거나...(이하생략)</p>
제41조(환매수수료) 제2항	종류 A-e, C-e, S, 추가	(추가)	<p>2. 종류 A-e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없음</p> <p>4. 종류 C-e 수익증권: 90일미만: 이익금의 70%</p> <p>6. 종류 S 수익증권: 90일미만: 이익금의 70%</p>